

제 18 장 노동

제 18.1 조 공동약속 성명

양 당사국은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과 그 후속조치」(1998)(이하 “국제노동기구선언”이라 한다)의 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확인한다.

제 1 절 의 무

제 18.2 조 일반적 의무

각 당사국의 헌법과 노동법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확인하고, 각 당사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국의 노동법을 채택하거나 수정하며 자국의 노동정책의 집행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노동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노동권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보호를 구현하고 제공함을 보장한다.¹

- 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 나. 모든 형태의 강요에 의한 또는 강제적 노동의 철폐
- 다.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폐지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 라. 고용 및 직업상 차별의 철폐
- 마.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금근로자를 포함하여, 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과 같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고용기준
- 바. 직업상 부상 및 질병의 예방

¹ 이 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을 성립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이 조에 언급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된 원칙의 보호를 자국의 노동법에 구현하고 제공함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 직업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아.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비차별

제 18.3 조 보호수준 저하 금지

면제 또는 이탈이 제18.2조에 규정된 권리에 불합치할 경우,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18.2조를 이행하는 자국의 노동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고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제 18.4 조 정부집행 조치²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정부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가. 감독관의 임명 및 교육

나. 준수여부의 감시 및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의 조사

다. 기록보관 및 보고 요구

라. 작업장의 노동규정을 다루기 위한 노사협의회의 설치 장려

마. 조정, 화해 및 중재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장려, 그리고

바. 자국 노동법의 위반에 대한 적절한 제재 또는 구제를 위한 절차의 시의 적절한 개시

2. 각 당사국은 사용자, 근로자 또는 그들의 대표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당사국 노동법의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요청할 경우,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요청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절히 고려함을 보장한다.

제 18.5 조 사적 조치

² 이 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무역 또는 투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음과 분쟁의 사안이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의 적용 대상이 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다음의 권한을 가진 재판소의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가. 그 당사국의 노동법을 집행하고 그러한 인의 노동권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 그 당사국의 노동법 또는 노동권 위반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권한

제 18.6 조 절차적 보장

1. 각 당사국은 제18.4조제1항나호, 제18.4조제1항바호 그리고 제18.5조에 언급된 조사 또는 절차가

가. 공정·공평·투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나. 이러한 절차의 적절한 운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에 공개되고,

다. 불합리한 수수료, 지연 또는 시간 제한을 수반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절차의 본안에 대한 최종결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가급적 그 결정이 기초하고 있는 사유를 기술하며, 적기에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규정한다.

3.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의 당사자가 적절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재심과, 정당한 경우 정정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제 18.7 조 정보공개

각 당사국은 집행 및 준수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국의 노동법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제 2 절 제도적 장치

제 18.8 조 장관급 노동 협의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장관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 장관급 협의회를 설치한다.
2.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마다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 장에 따른 진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협의회는 이 장의 적용범위 내의 모든 사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협의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5년 이내에 또는 협의회가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내에, 경험에 비추어 이 장의 운영 및 유효성을 검토한다.

제 18.9 조 국가 접촉선

각 당사국은 노동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내에 국가접촉선(이하 “NPC” 라 한다) 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외교문서를 통하여 자국 접촉선의 연락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제 18.10 조 공중의견제출제도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노동법 사안에 대한 공중의견의 제출 및 접수를 규정하고, 그 목록을 주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가. 그 당사국의 국민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기관에 의하여 제기된 사안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 그리고
- 다. 제 1 절상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

2. 각 당사국은 부속서 18-나에 따른 국내 절차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사안을 검토한다.

제 18.11 조 협력활동

양 당사국은, 부속서 18-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장의 목적을 증진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다른 쪽 당사국의 노동제도에 대한 각 당사국의 더 나은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 협력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제 18.12 조 일반 협의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NPC에 서면요청서를 전달함으로써 이 장의 의무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협력, 협의 및 정보교환을 포함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3. 양 당사국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제18.13조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 3 절 의무검토 절차

제 18.13 조 노동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장관급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60일 이내에 응답한다.
2. 각 당사국은 개인 및 상업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자국의 국내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제기된 사안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충분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고려중인 사안의 논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은 한 명 이상의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보고서 준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고서는 장관의 수령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중에 공개된다. 양 당사국은 전문가 또는 복수의 전문가 선정에 합의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보고서 준비에 있어 그 전문가 또는 복수의 전문가와 협력한다.

4. 노동협의를,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 후 180일 이내에 종결된다.

제 18.14 조 검토패널^{3,4}

1. 노동 협의 종결 이후에, 협의를 요청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검토패널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이 제1절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 그 사안이 노동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패널은 이 절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3. 검토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그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 사안이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이 없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중단한다.

4. 검토패널은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제 18.15 조 패널위원

1. 검토패널은 3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2. 패널위원은

가. 노동 또는 유관 분야의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 및 올바른 판단력에 기초하여 선정된다.

나.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제후 관계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³ 상호주의 원칙을 인정하며, 검토패널 요청 전에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의무가 자국영역 내 자국 노동력의 합리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⁴ 당사국은 무역 또는 투자와 관련된 실질 내용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이 조에 따른 분쟁해결에 회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 부속서 21-나(패널 구성원의 행동규범)에 규정된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3. 패널위원이 행동규범을 위반한다고 어느 한쪽 당사국이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패널위원은 해임되고, 해임된 패널위원 선정 시 사용되었던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패널위원이 선정된다. 기한은 양 당사국이 그 패널위원을 해임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기산된다.

4. 개인은 그 또는 그와 제휴관계에 있는 인 또는 기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의 검토에 관하여 패널위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한다.

5.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6. 패널위원은 부속서18-라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제 18.16 조 검토패널을 위한 정보

1. 양 당사국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다(모범 절차 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검토패널에 서면 및 구두로 입장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검토패널은 관련 정보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 협회, 대중 그리고 인에게 서면입장 및 그 밖의 정보를 요청하거나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다.

제 18.17 조 최초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패널은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제18.16조에 따라 패널에게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검토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후18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하는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사실의 조사결과

나.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1절의 의무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판정을 준수하지 못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 그리고

다. 그 사안을 다루기 위한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권고

3. 패널위원은 만장일치 합의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패널은 어느 패널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의 의견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이라도 최초 보고서의 제출시부터 45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검토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5. 그러한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검토패널은 자체발의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의 견해 요청

나. 보고서의 재검토, 그리고

다. 검토패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

제 18.18 조 최종 보고서

1. 검토패널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별도의 의견을 포함하여, 최초 보고서의 제출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된 후 12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3. 검토패널이 최종 보고서에서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1절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양 당사국은 그 다음 90일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더 긴 기간 이내에 검토패널의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만족스러운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 후, 양 당사국이 조치계획을 결정할 수 없거나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조치계획을 그 조건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 당사국은 부속서18-마에 따라 금전적 평가액의 산정 및 지불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패널이 재소집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 4 절 일반규정

**제 18.19 조
집행원칙**

이 장은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18.20 조
사적 권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 장에 불합치한 방식으로 행위를 하였음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제소권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 18.21 조
국내절차의 보장**

각 당사국의 재판소의 결정 또는 계류 중인 결정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는 이 장에 따른 수정 또는 재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8.22 조
정보 보호**

1.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 또는 독점적 정보로 확인된 정보를 받은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정보의 기밀성 또는 독점성을 보호한다.
2. 이 장에 따라 검토패널에게 제공된 비밀 또는 독점적 정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되는 부속서 21-다 제32항(비밀 유지)에 따라 취급된다.

**제 18.23 조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협력**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합의에 의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국 또는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 및 자원을 가진 그 밖의 모든 권한 있는 국제기구 및 지역 기구의 도움을 추구할 수 있다.

**제 18.24 조
분쟁해결**

당사국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 21 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 18.25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적법절차란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그 사안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는 의사결정자에 의하여 수행된 절차로, 그 절차의 당사자가 그들 각자의 입장을 지지 또는 방어하고 정보 또는 증거를 제출할 자격이 있으며, 그 결정이 그러한 정보 또는 증거에 근거함을 말한다.

강요에 의한 또는 강제적 노동은 강제적인 군 복무, 특정한 시민의 의무, 사적인 목적이 아닌 교도소 노역 그리고 비상시에 요구된 작업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노동법이란 제18.2조에서 규정된 노동원칙과 권리를 시행하고 보호하는 법, 규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제를 말한다.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이란 양 당사국에서 동일한 일반적 대상을 권리, 보호 또는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노동법을 말한다. 그렇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호 인정되는 노동법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의 법이 다른 쪽 당사국의 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이란 자연인, 기업 또는 사용자나 근로자 단체를 말한다.

부속서 18-가 협력활동

1. 제18.9조에 따라 설치된 NPC는 노동협력활동을 위한 접촉선으로서 역할을 한다.
2. 노동부와 그 밖의 적절한 기관 및 부처의 공무원은 다음을 위하여 협력한다.
 - 가. 노동 사안에 관한 협력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 나.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활동 개발
 - 다. 각 당사국의 노동법 및 관행에 관한 정보 교환
 - 라. 최적 노동관행을 포함한 노동법 및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정보 교환, 그리고
 - 마. 국제노동기구선언에 반영된 원칙에 대한 이해, 존중 및 효과적인 이행의 증진
3. 양 당사국간의 협력활동은 다음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공통관심의 정책사안 및 그것의 효과적인 적용: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고용의 비차별, 아동노동, 강제노동, 직업상 보건 및 안전, 작업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근로기준, 근로혜택, 그리고 이주 근로자와 관련된 법령, 관행 및 이행
 - 나. 노사관계: 노사정간 협력 형태 및 분쟁해결
 - 다.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과 실업 지원 프로그램
 - 라.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능력개발과 평생학습 및 훈련
 - 마.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방법론 및 경험
 - 바. 노동통계,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4. 제3항에 따라 합의된 협력활동은 다음을 통하여 시행될 수 있다.

- 가. 연수와 그 밖의 기술교류를 포함하는 대표단, 전문 직업인 및 전문가교류
- 나. 발간물 및 연구 논문을 포함한 정보, 표준, 규정 및 절차 그리고 최적 관행의 교환
- 다. 공동회의·세미나·워크샵·회의·훈련·대외접촉활동 및 교육프로그램의 조직
- 라. 합작사업 또는 시연의 개발
- 마. 인정된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 연구사업, 연구 및 보고
- 바. 노동관련 사안에 대하여 ILO 와 같은 국제적인 포럼 내에서의 협력, 그리고
-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기술교류 또는 협력

5. 협력분야를 확인하고 협력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은 각각 자국의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의 견해를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그들 간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입법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부속서 18 - 나 공중의견제출제도

NPC에 공중의견을 제출하는 인의 권리와 관련되는 각 당사국의 공중의견제출 절차는 특히 다음을 명시한다.

- 가. 다음을 포함하여 의견의 수락과 관련된 요건
 - 1)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내 재판소에서 구제가 추구되었고 그러한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안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다만, 국내 재판소의 절차가 제18.5조에 합치하여야 한다.
 - 2)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에 계류 중인 사안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 3) 사소하거나, 경솔하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의견의 제출은 수락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4) 의견은 이전에 제출된 의견과 실질적으로 다르거나, 이전의 의견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롭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할 것
- 나. 다른 쪽 당사국과의 조기 협의가 있을 것
- 다. 최종보고서는 제출자,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할 것, 그리고
- 라. 의견에 대하여 검토할 것임을 공표하는 경우와, 최종 보고서의 공개를 공표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할 것

부속서 18-다 의무의 범위

1. 이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에, 캐나다는 그 관할 지역내의 사안에 관하여 캐나다가 구속될 주의 목록과 함께 서면 선언문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한국에 제공한다. 선언문은 한국에 전달 시 효력을 발생하며, 캐나다 내의 내부적 권한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캐나다는 자국의 선언문을 수정하기 6개월 이전에 한국에 통지한다.
2. 캐나다는 제1항에 따른 선언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 정부의 요청으로, 또는 그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제3절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3. 한국은 그 주가 제1항에 따른 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주의 노동법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제3절에 따른 패널 설치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4. 캐나다는, 제3항의 적용범위내의 사안에 관하여 제18.14조에 따라 검토패널이 소집된 날보다 더 늦지 아니하게, 제18.18조에 따른 최종 보고서의 검토 패널의 권고 또는 부속서18-마에 따라 결정된 캐나다와 관련한 금전적 평가가 캐나다의 군주로서 여왕에게 송부되는지 또는 관련 주의 군주로서 여왕에게 송부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한국에 통지한다.
5. 캐나다는 이 장이 가능한 한 많은 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부속서 18-라
검토패널과 관련된 절차

검토패널 선정 절차

1. 패널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 가. 각 당사국은 검토패널 설치 요청의 접수시부터 20일 이내에 한 명의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이내에 자국의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패널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당사국의 국민인 자격을 갖춘 개인 중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그리고
 - 다. 다음의 절차는 의장의 선정에 적용된다.
 - 1)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요청 당사국에게 의장이 될 자격이 있는 3명의 이름을 제공한다. 그 이름들은 검토패널 설치 요청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제공된다.
 - 2) 요청 당사국은 그 개인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정하거나 또는, 이름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그 중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에게 의장이 될 자격을 갖춘 3명의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이름들은 1목에 따라 이름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또는 검토패널 설치 요청을 접수한 후 25일 이내에 제공된다. 그리고
 - 3)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은, 2목에 따른 이름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3명의 개인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하지 못한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의 사무총장에게 25일 이내에 의장을 임명하도록 즉시 요청한다.

절차규칙

2. 제21.8조(절차규칙)에 따른 절차규칙은 이 장에 따른 검토패널절차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
3.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검토패널절차 각각을 위한 별도 예산에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그 예산에 균등하게 기여한다.

패널 위임사항

4. 양 당사국이 검토패널이 소집된 후 30 일 이내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청의 대상인 당사국이 제 1 절 상의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이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18.17 조제 1 항 및 제 18.17 조제 2 항에 따라 조사, 판정 및 권고함”

부속서 18-마 금전적 평가액

1. 검토패널은 제18.18조제4항에 따른 요청이 전달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된다. 검토패널은 재소집 이후 90일 이내에 조치계획의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또는 불이행이 달리 시정되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부정적 판정을 내리는 경우 및 제소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패널은 제18.14조제1항의 의미 내에서의 불이행 또는 조치계획의 불이행과 관련되는 부정적인 무역효과에 동등한 정도에 해당하는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산정하고, 검토패널은 다음을 반영하여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검토패널의 최종 보고서 이후 그 당사국이 그러한 불이행 시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기울인 선의의 노력, 그 당사국이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진실된 이유와 같은 감경요인, 그리고
 - 나. 그 당사국이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의 만연성 및 지속 기간과 같은 가중요인
3. 금전적 평가액은 협의회에 의하여 지정된 이자가 붙는 기금에 지불되며 협의회의 지시에 따라 조치계획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된다.
4. 제2항에 따라 검토패널이 금전적 평가액을 결정한 날부터 90일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제소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금전적 평가액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금전적 평가액은 요청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한 후 120일부터 시작하여 양 당사국의 결정 또는 제5항에 따른 검토패널 결정일까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불된다.
5. 검토의 대상이었던 당사국이 불이행을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검토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검토패널은 그 통보시부터 60일 이내에 재소집되고 그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6. 캐나다에서 금전적 평가의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은 캐나다가 제4항에 따른 통보 후 180일 이내에 그 통보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상기 제2항에 따른 검토패널 판정의 인증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나. 검토패널의 판정은, 제출시, 집행을 목적으로, 해당법원의 명령이 된다.

- 다. 한국은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 집행을 위하여, 그 법원에 부속서 18-다의 제4항에 따라 검토패널의 판정이 송부된 캐나다의 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라.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는 캐나다에서 약식절차방식으로 실시된다. 다만, 그 법원이 검토패널 판정의 사실 또는 해석에 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그 판정을 내린 검토패널에 회부하고 그 검토패널의 결정은 법원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 마.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은 국내법에 따른 재심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바. 법원의 명령이 된 검토패널의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서 법원에 의한 명령은 재심 또는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 한국은 자국영역에서 금전적 평가의 집행을 규정한다.